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
[서울행정법원 2007. 9. 28. 2005구합30068,2005구합41082(병합)]

【전문】

- 【원 고】 블룸버그코리아 유한회사 (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외 4인)
- 【피 고】종로세무서장 (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인 담당변호사 김재광 외 1인)
- 【변론종결】2007. 6. 22.

【주문】

]

- 1. 피고가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중 70%는 원고가 부담하고, 나머지 30%는 피고가 부담한다.
- 【청구취지】주문과 같다.

[이유]

- 】1. 부과처분의 경위
- 가.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,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미합중국 뉴욕주 렉싱턴 애 버뉴 731에 주된 사무소를 둔 블룸버그 리미티드 파트너쉽(Bloomberg Limited Partnership, 이하 '비엘피'라고 한다)이 100%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 내 자회사이다.
- 나. 원고는 1996. 3. 1. 비엘피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비엘피에게 비엘피의 미국 내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될 한국 내자본시장 및 주요 기업들의 경제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용역(이하 '이 사건 정보수집용역'이라고 한다)과 비엘피의 한국 내고객이 비엘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데 필요한 플랫패널,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장비, 노드와 라이터의 수입, 설치 및 유지, 보수(이하 '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'이라고 한다)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

다만,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은 원고가 비엘피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Computer Project Systems Engineering 주식회사(이하 '시피에스'라고 한다)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피에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.

다.

- 원고는 1997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비엘피로부터 이 사건 정보수집 용역과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 (이하, 이 사건 정보수집 용역과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을 통칭하여 "이 사건 용역"이라고 한다)의 공급대가로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의 1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취하였다.
-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외화획득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 매출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.
- 라. 서울지방국세청은 2002. 7. 22.부터 같은 해 9. 16.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, 비엘피는 국내에 서 자회사인 원고 등의 인적, 물적시설 등을 이용하여 비엘피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해오는 등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해왔고, 이 사건 용역은 비엘피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 11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, 2002.

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

12. 11. 이러한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.

- 마. 피고는 위 통지에 따라 원고의 본점 소재지(서울 종로구 세종로 이하 생략)를 비엘피의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비엘피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였고, 원고가 영세율로 신고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매출을 일반매출(부가가치세가 10% 적용되는 매출)로 전환하여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(이하,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를 "이 사건 각 부과처분'이라 한다).
- 바.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, 피고의 2003. 1. 15.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3. 4. 15., 2004. 1. 19.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4. 4. 12. 각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2005. 7. 5. 모두 기각되었고, 피고의 2004. 6. 16.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4. 9. 17., 2004. 10. 15.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5. 1. 11. 각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2005. 9. 23. 모두 기각되었다.

[이유]

】1. 부과처분의 경위

- 가.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,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미합중국 뉴욕주 렉싱턴 애 버뉴 731에 주된 사무소를 둔 블룸버그 리미티드 파트너쉽(Bloomberg Limited Partnership, 이하 '비엘피'라고 한다)이 100%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 내 자회사이다.
- 나. 원고는 1996. 3. 1. 비엘피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비엘피에게 비엘피의 미국 내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될 한국 내자본시장 및 주요 기업들의 경제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용역(이하 '이 사건 정보수집용역'이라고 한다)과 비엘피의 한국 내고객이 비엘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데 필요한 플랫패널,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장비, 노드와 라이터의 수입, 설치 및 유지, 보수(이하 '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'이라고 한다)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

다만,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은 원고가 비엘피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Computer Project Systems Engineering 주식회사(이하 '시피에스'라고 한다)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피에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. 다.

- 원고는 1997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비엘피로부터 이 사건 정보수집 용역과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 (이하, 이 사건 정보수집 용역과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을 통칭하여 "이 사건 용역"이라고 한다)의 공급대가로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의 1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취하였다.
-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외화획득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 매출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.
- 라. 서울지방국세청은 2002. 7. 22.부터 같은 해 9. 16.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, 비엘피는 국내에서 자회사인 원고 등의 인적, 물적시설 등을 이용하여 비엘피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해오는 등 국내에고 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해왔고, 이 사건 용역은 비엘피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 11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, 2002. 12. 11. 이러한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.

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마. 피고는 위 통지에 따라 원고의 본점 소재지(서울 종로구 세종로 이하 생략)를 비엘피의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비엘 피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였고, 원고가 영세율로 신고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매출을 일반매출(부가가치세가 10% 적용되는 매출)로 전환하여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(이하,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를 "이 사건 각 부과처분'이라 한다).
- 바.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, 피고의 2003. 1. 15.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3. 4. 15., 2004. 1. 19.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4. 4. 12. 각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2005. 7. 5. 모두 기각되었고, 피고의 2004. 6. 16.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4. 9. 17., 2004. 10. 15.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5. 1. 11. 각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2005. 9. 23. 모두 기각되었다.

【이유】

】1. 부과처분의 경위

- 가. 원고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사업, 부가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미합중국 뉴욕주 렉싱턴 애 버뉴 731에 주된 사무소를 둔 블룸버그 리미티드 파트너쉽(Bloomberg Limited Partnership, 이하 '비엘피'라고 한다)이 100% 출자하여 설립한 한국 내 자회사이다.
- 나. 원고는 1996. 3. 1. 비엘피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비엘피에게 비엘피의 미국 내 데이터 베이스에 포함될 한국 내자본시장 및 주요 기업들의 경제 및 기타 정보를 수집하여 전달하는 용역(이하 '이 사건 정보수집용역'이라고 한다)과 비엘피의 한국 내고객이 비엘피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공급받는 데 필요한 플랫패널, 개인용 컴퓨터와 같은 장비, 노드와 라이터의 수입, 설치 및 유지, 보수(이하 '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'이라고 한다)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있다

다만,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은 원고가 비엘피에게 직접 제공하지 않고 Computer Project Systems Engineering 주식회사(이하 '시피에스'라고 한다)와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시피에스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.

다.

- 원고는 1997 사업연도부터 2002 사업연도까지 사이에 비엘피로부터 이 사건 정보수집 용역과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 (이하, 이 사건 정보수집 용역과 이 사건 장비설치 용역을 통칭하여 "이 사건 용역"이라고 한다)의 공급대가로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의 110%에 상당하는 금액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취하였다.
- 원고는 이 사건 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한 외화획득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영세율 매출분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다.
- 라. 서울지방국세청은 2002. 7. 22.부터 같은 해 9. 16.까지 원고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, 비엘피는 국내에서 자회사인 원고 등의 인적, 물적시설 등을 이용하여 비엘피 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을 해오는 등 국내에고 정사업장을 두고 사업을 해왔고, 이 사건 용역은 비엘피의 국내사업장에 제공된 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 11조 제1항 제4호가 규정한 외화획득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 매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다음, 2002. 12. 11. 이러한 세무조사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하였다.

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

- 마. 피고는 위 통지에 따라 원고의 본점 소재지(서울 종로구 세종로 이하 생략)를 비엘피의 사업장 주소지로 하여 비엘피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직권으로 하였고, 원고가 영세율로 신고한 이 사건 용역에 대한 매출을 일반매출(부가가치세가 10% 적용되는 매출)로 전환하여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과처분일에 별지 부과처분 명세표 기재 각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다(이하, 위 각 부가가치세 부과를 "이 사건 각 부과처분'이라 한다).
- 바. 원고는 이 사건 각 부과처분에 불복하여, 피고의 2003. 1. 15.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3. 4. 15., 2004. 1. 19.자 부 과처분에 대하여는 2004. 4. 12. 각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2005. 7. 5. 모두 기각되었고, 피고의 2004. 6. 16.자 부 과처분에 대하여는 2004. 9. 17., 2004. 10. 15.자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5. 1. 11. 각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, 2005. 9. 23. 모두 기각되었다.

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